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 2. 24.

의안 번호	678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12.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다솔어린이집 외 1개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동 입소·상담, 보육 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관리, 조직·인사·회계 등
- 수탁재산의 관리 : 시설, 장비, 비품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기간**

- 다솔어린이집 : 2026. 5. 9. ~ 2031. 5. 8.(5년)
- 압구정아람어린이집 : 2026. 7. 1. ~ 2031. 6. 30.(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 득점 운영체 선정

다. 위탁시설 개요

○ **다솔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개포로 264단지 내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304㎡
- 지원시설 : 보육실 6개, 조리실 1개, 공동놀이실 1개 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간 1,005,553천원 [국30%, 시49%, 구21%]

(단위: 원)

항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836,388,380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연장근무수당 등	40,100,000	
		퇴직적립금	73,040,700	
		보험료	93,842,900	
		소 계	1,043,371,98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6,2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799,000	
		복리후생비 등	10,640,000	
		소 계	96,639,000	
	사업비	보육활동비 등	342,794,020	
		수익자부담경비	181,710,000	
		소 계	524,504,020	
	지출원가 합계Ⓐ		**1,664,515,000**	
수입원가	수익자부담수입		181,710,000	
	사용료		-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의거 무상 사용
	이용료(보육료)		477,252,000	
	수입원가 합계Ⓑ		**658,962,000**	
위탁비용(Ⓐ-Ⓑ)			**1,005,553,000**	

○ 압구정아람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압구정로 311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89㎡
- 지원시설 : 보육실 8개, 조리실 1개, 공동놀이실 1개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간 771,887천원 [국30%, 시49%, 구21%]

(단위: 원)

항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658,386,000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연장근무수당 등	38,110,000	
		퇴직적립금	58,042,000	
		보험료	74,815,000	
		소 계	829,353,0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0,9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399,000	
		복리후생비 등	9,910,000	
		소 계	85,209,000	
	사업비	보육활동비 등	305,465,000	
		수익자부담경비	158,130,000	
		소 계	463,595,000	
	지출원가 합계Ⓐ		**1,378,157,000**	
수입원가	수익자부담수입		158,130,000	
	사용료		-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의거 무상 사용
	이용료(보육료)		448,140,000	
	수입원가 합계Ⓑ		**606,270,000**	
위탁비용(Ⓐ-Ⓑ)			**771,887,000**	

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마.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동의안 제출 배경 등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다솔, 압구정아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위탁사무명,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 주요 사항 검토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민간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다솔, 압구정아람)이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임.

○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제출되었고,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임.

나. 성과평가 관련

○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정기적으로(3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단서에 근거하여 이를 성

과평가로 갈음하고 있음.

○ 부서 자료 확인 결과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평가 결과 2개소 모두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충족’ 한다는 총평을 받았음.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상 영유아 성장 단계에 대한 이해 및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 ② 관계 법령과 지침에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회계관리, 보육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③ 행정의 효율과 보육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종합 의견**

○ 어린이집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배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 여부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

○ 덧붙여, 다솔어린이집의 경우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이 2026. 5. 8.자로 만료될 예정이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수탁자 모집공고, 계약 심사 및 계약 체결까지의 소요 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78

제출연월일 : 2026.2.1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다솔어린이집 외 1개소)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동 입소·상담, 보육 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관리, 조직·인사·회계 등

○ 수탁재산의 관리 : 시설, 장비, 비품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다솔어린이집 : 2026. 5. 9. ~ 2031. 5. 8.(5년)

○ 압구정아람어린이집 : 2026. 7. 1. ~ 2031. 6. 30.(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70점 이상 최다 득점 운영체 선정

3. 위탁시설 개요

가. 다솔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개포로 264단지 내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304㎡

○ 지원시설 : 보육실 6개, 조리실 1개, 공동놀이실 1개 등

○ 위 치 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연간 1,005,553천원 [국30%, 시49%, 구21%]

(단위: 원)

항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836,388,380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연장근무수당 등	40,100,000	
		퇴직적립금	73,040,700	
		보험료	93,842,900	
		소 계	1,043,371,98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6,2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799,000	
		복리후생비 등	10,640,000	
		소 계	96,639,000	
	사업비	보육활동비 등	342,794,020	
		수익자부담경비	181,710,000	
		소 계	524,504,020	
	지출원가 합계Ⓐ		**1,664,515,000**	
수입원가	수익자부담수입		181,710,000	
	사용료		-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의거 무상 사용
	이용료(보육료)		477,252,000	
	수입원가 합계Ⓑ		**658,962,000**	
위탁비용 (Ⓐ-Ⓑ)			**1,005,55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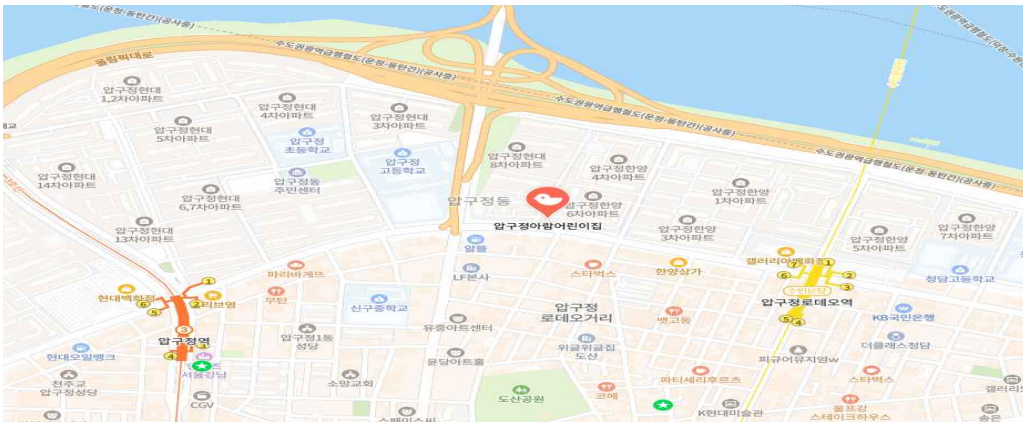
나. 압구정아람어린이집

○ 소 재 지 : 강남구 압구정로 311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89㎡

○ 지원시설 : 보육실 8개, 조리실 1개, 공동놀이실 1개 등

○ 위 치 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연간 771,887천원 [국30%, 시49%, 구21%]

(단위: 원)

항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658,386,000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연장근무수당 등	38,110,000	
		퇴직적립금	58,042,000	
		보험료	74,815,000	
		소 계	829,353,0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0,90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399,000	
		복리후생비 등	9,910,000	
		소 계	85,209,000	
	사업비	보육활동비 등	305,465,000	
		수익자부담경비	158,130,000	
		소 계	463,595,000	
	지출원가 합계Ⓐ		**1,378,157,000**	
수입원가	수익자부담수입		158,130,000	
	사용료		-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의거 무상 사용
	이용료(보육료)		448,140,000	
	수입원가 합계Ⓑ		**606,270,000**	
위탁비용 (Ⓐ-Ⓑ)			**771,887,000**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